

의안번호	제950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발의자	박지현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박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50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 의 자 : 박지현, 이상식, 김종필,
김현문, 이동우, 이상정,
박용규, 유재목 의원

1. 제안이유

- 본 조례를 통해 감염병 환자 및 병력자에 대한 도민의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인권 중심의 공공보건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비용추계 : 붙임
- 협 의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감염병정책과
- 조례안 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나.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다.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병원체보유자

라.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2. 제1호 외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복지 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 관련 정보의 안내, 홍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아니 되며,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치료 및 법률상담 지원
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사회 복귀를 위하여 시·군 및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제4항제1호

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 유

- 본 조례안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의하고 있으나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이에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